

핵심쟁점 69-1 징계사유의 정당성 - 내부고발

69-1 징계사유의 정당성 - 내부고발

| Key point |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1. 내부고발의 의의 : 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행위
2. 내부고발과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 ①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징계의 정당성 부정
 - ②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위반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
 - ③ 구체적 사례

I.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경우, 해당 징계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II. 내부고발과 근로자 징계의 정당성

1. 내부고발의 의의

내부고발이 무엇인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는 노동법적인 쟁점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직에 속한 근로자가 그 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조직이나 외부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이해하고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¹⁾

즉 근로자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행위, 소속 조직의 위법·비리행위 등 내부 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제하고서 논의를 이어간다.²⁾

2. 내부고발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1)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4조 1항, 2항)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조 18조 등에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감독기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1) 최흥기,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법제연구』 44호, 614-615p 참조

2) 조용만·김홍영 4판, 280p 참조

가. 내부고발과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한다.³⁾

나. 내부고발이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인지의 판단기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⁴⁾

특히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 및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내부고발행위를 일반사기업에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⁵⁾

구체적으로는 i)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 ii)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iii) 공개 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한다.⁶⁾

하지만 i)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ii) 상당한 근거나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혹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고 까지 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다.⁷⁾

3)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4) 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5) 대법원 1999.12.21. 선고 98두7787 판결 참조

6)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7)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